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4.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이 신축됨에 따라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의 포괄적인 관리·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이용시간 및 휴관일, 사용료 등을 명시하여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 주소 적용(안 별표 1)

나. 선산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의 이용시간, 휴관일 규정 신설

(안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다. 선산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및 생활관 사용료 규정 신설(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불임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불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재료비 등 수련활동비”를 “재료비 등 시설이용비, 수련
활동비”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수련활동비 표의 다음에 수영장 사용료 표 및 생활관 사용료
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비고
1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구미시 선산읍 단계동길 270	
2	구미시 청소년문화의 집	구미시 상사서로4길 10	
3	구미시 해평청소년수련원	구미시 해평면 해평4길 12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시간(제3조의2 관련)

시 설 명	평일	토, 일 공휴일	비고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09:00~21:00	09:00~18:00	※ 단,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구미시 청소년문화의 집	09:00~21:00	09:00~18:00	
구미시 해평청소년수련원	09:00~18:00	09:00~18:00	

시 설 명	평일, 토요일	공휴일	비고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수영장	06:00~21:00	09:00~18:00	※ 단,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의3]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휴관일(제3조의3 관련)

시 설 명	휴관일	비고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매월 1, 3주 월요일	※ 법정공휴일 : 시설 및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휴관할 수 있다.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매주 일요일	
구미시 청소년문화의 집	매주 월요일	
구미시 해평청소년수련원	-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1.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 수영장 사용료

운영일	이용요금			비고
월~금(강습) 토요일(자유이용)	월정기권	성 인	60,000원	
		청 소 년	50,000원	
		어린이/경로	42,000원	
	1일 이용 (당일에 한함)	성 인	3,500원	
		청 소 년	3,000원	
		어린이/경로	2,500원	
	1일 이용 (30명 이상 단체)	성 인	3,000원	
		청 소 년	2,500원	
		어린이/경로	2,000원	

※ 어린이는 9세 미만, 경로는 65세 이상임.

※ 월 회원중 13~55세까지의 여성은 월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적용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월의 사용 가능일 중 3일을 공제한다.

☐ 생활관 사용료

구 분	숙박비 (1인1박)	식 비 (1박3식)	시설이용비 (1박2일)	수련활동비 (1박2일)	합 계 (1박2일)	비고
청 소 년	4,000	12,000	2,500	2,000	20,500	※ 당일 10:00 ~익일 11:00
일 반	5,000	15,000	-	-	20,000	

※ 숙박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용료”란 수련시설의 시설 일부를 사용허가 받은 자, 시장 또는 수탁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 및 <u>재료비 등 수련활동비</u> 를 말한다.	4. ----- ----- ----- ----- ----- <u>재료비 등 시설이용비, 수련활동비</u> -.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단서생략 <개정 2012.3.21.>

② ~ ③ 생략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생략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 5. 생략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 8. 생략

[전문개정 2014.3.24.]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5.28.>

1.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청소년 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라 함은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하 "교류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지역간·남북간·국가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하 "문화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라 함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7.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선산청소년수련관(수영장, 생활관) 추가 건립에 따른 관리(각종 공과금) 운영비(인건비) 추가 발생
- 수영장, 생활관 사용료 신설에 따른 세입 발생(안 별표 2)

2. 비용추계의 전제

- 선산청소년수련관(수영장, 생활관) 추가 건립에 따른 각종 운영비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위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계함.
- 추계기간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5개년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 입	531,562	1,063,125	1,063,125	1,063,125	1,063,125	4,784,062
세 출	630,600	1,299,036	1,338,007	1,378,147	1,419,491	6,065,281
총 비용(a-b)	-99,038	-235,911	-274,882	-315,022	-356,366	-1,281,219

※ 1차년도 : 6개월분 / 세출 2차년도 이후 매년 인상률 3% 반영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시 비	630,600	1,299,036	1,338,007	1,378,147	1,419,491	6,065,281

5. 부대의견

- 세입(시설사용료) 및 세출(시설 관리 운영비)예산은 추정비로서, 여건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재정 소요액도 변동이 생길 수 있음.

6. 작성자

- 안정행정국 새마을과 이은주(480-519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입예산

[단위 : 명/천원]

시 설 명	회원권		1일권		합계
	이용객수	수입금	이용객수	수입금	
수영장	136,144	243,154	20,483	55,857	299,010

시 설 명	이용객수	객단가	합계
생활관	76,411	10	764,115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위탁비	합 계
수영장/생활관	390,000	635,000	236,200	1,261,200